

고성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의안번호 제2930호)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: 2025. 3. 28.

고 성 군 수

나. 회 부 일 자: 2025. 3. 28.

다. 상 정 · 의 결 일 자: 2025. 4. 9.

기획행정위원회 상정·원안가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(설명자: 보건행정과장 이윤희)

가. 개정이유

-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따른 사회보장제도 신설·변경 협의 운용 지침 변경에 따라 본인부담금 징수 내용을 포함하기 위함

나. 주요내용

- 지원 금액 및 횟수 변경(안 제4조)
 - “1회에 한하여 전액”
→ “다음 각 호에 따라 전액 또는 일부”
 -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제2조제2호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사람
: 예방접종에 따른 본인부담금 전액
 - 제1호 외의 사람: 예방접종에 필요한 비용 일부 지원

다. 참고사항

1) 관계법령

가) 「사회보장기본법」 제26조

나)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제2조

2) 예산조치: 2025년 당초예산 확보

3) 합 의

- 성별영향평가(복지지원과 여성친화담당)
 - 개선사항 없음[복지지원과-6378(2025. 2. 14.)호]
- 「사회보장기본법」 사회보장제도 협의
 - 협의완료[보건복지부 사회보장조정과-297(2025. 1. 17.)]

4) 기 타

가) 입법예고: 고성군 공고 제2025-283호

- 예고기간: 2025. 2. 10. ~ 2025. 3. 4.(22일간)
- 예고결과: 의견없음

나) 규제심사: 해당사항 없음

다) 부패영향평가: 해당사항 없음

라) 신·구조문대비표: 붙임

마) 비용추계서: 붙임

3. 전문위원 검토요지(전문위원: 장혜정)

○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서 규정한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따른 협의결과 본인부담금 징수가 불가피함에 따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

○ 조례안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.

- 지원금액 및 횟수(안 제4조)
 - 예방접종 비용을 1회 전액지원하던 것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한하여 전액지원하고, 그 외의 경우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규정하였음.

○ 상위법령 검토 결과 조례안 내용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며, 「사회보장기본법」에 따른 사회보장협의 결과를 반영하여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한하여 전액 지원하고 그 외의 경우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: 없음

5. 토 론: 없음

6. 심사결과: 2025. 4. 9.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의 요지: 없음

8. 기타 필요한 사항: 없음